

대전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가단1238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3. 28.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7.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는 2008. 6.경부터 2012. 2.경까지 부과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9. 12. 31. 기준 체납세액이 252,018,940원(가산금 포함)에 이르렀다.

나. B와 피고의 어머니인 망 C가 2019. 7. 1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D이 3/11, 자녀인 B, E, F, 피고가 각 2/11 지분씩 망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7. 17.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B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가 B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추적·관리해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사실도 그 무렵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B가 관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9. 7. 17.에 있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22. 6. 28. 제기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B의 재산을 추적·관리해왔다고 하더라도, 망 C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이 B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등기부상 B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22. 2. 18. 옥천군수에게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신고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 그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B가 자신의 지분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긴 사실이 기재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포함되어 있던 사실(갑 제7호증), 이후 원고가 2022.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될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9. 7. 17. 무렵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B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11 지분 소유권(감정평가액 약 24,373,636원)과 3,600만원의 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조세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B는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자신의 행위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 및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해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망 C의 의사에 따라 단독상속한 것이라는 주장

피고는 망 C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줄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신이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을 뿐, B가 상속분 상당의 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망 C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제출한 제3자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 1)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7.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어야 한다.
 - 2) 한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가 상속받은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별지

- -

충청북도 옥천군 G 전 2,979㎡. 끝.

